#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0

발의연월일: 2020. 6. 25.

발 의 자:전주혜・이 용・황보승희

조태용 · 서범수 · 이주환

강대식 · 윤창현 · 김미애

최승재 • 한무경 • 윤주경

허은아 · 양금희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상담 및 법률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이후 양육비 이행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실제 양육비 이행률은 2019년 기준 35.6%로,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를 도입하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제21조의5 및 제27조제2항 신설).

#### 법률 제 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43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장에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 재산의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직권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 해제 요청 및 그 결과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
- 제21조의5(양육비 채무자의 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 을 공개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공개 기준, 공개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439호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 제1743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u>&lt;신 설&gt;</u>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
	<u>할 수 있다.</u>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
	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
	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
	<u> 여야 한다.</u>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 재
	산의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
	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
	시 직권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u>한다.</u>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u>설>

제27조(벌칙) ① (생 략) <신 설>

④ 그 밖에 출국금지 요청. 출 국금지 해제 요청 및 그 결과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439호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 제1743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제21조의5(양육비 채무자의 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정 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공개 기준, 공개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 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